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도마위에 올라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황기, 당귀 등 26개 품종의 한약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약재 수입이 전면 개방될 경우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의 붕괴와 함께 한의계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정부부처의 규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한약재 수급조절품목도 논의대상에 포함돼 한국생약 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제한에 대한 대외적 반발과 국내 사정을 고려해 수입 제한 조치를 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식회원국이나 한약재 품목은 가입을 미루고 있어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이들 한약재의 수입을 계속 막기는 어려워 언젠가는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돼 왔었다.

그러나 한약재의 수급조절품목을 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아닌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의 한다는데 대부분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절품목 폐지에 따라 한약재 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가격면에서 수입 한약재와 경쟁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한약재는 인삼이나 시호 등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돼 일본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한약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농가에서 한약재 재배를 포기할 경우 다년 생 한약재만이 아니라 일년생 한약재의 경우도 종자가 보존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의 말이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약재 재배의 포기는 대부분이 한약재 소멸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높다.

특히, 식용으로 재배되는 농산물과는 달리 재배 지역이나 방식에 따라 약효의 차이가 현격한 한약재의 국내 생산이 중단될 경우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대부분의 한약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약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까지 점쳐지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한약재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미약한 상황에서 아류의 한약재가 수입될 경우 한의학 자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져 품질기준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따라서 한약재는 일반 농산물과 같이 취급 되어서는 안되고 생산 차원에서부터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있어야 하며, 한약재 수입은 한의학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린 마음 열린회무